

제 16 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 16.1 조 배경과 목적

1. 양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 목적이 양 당사국의 무역관계의 모든 수준에 통합되고 반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양 당사국은 경제발전,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강화적인 구성요소라는 것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지구적인 접근방법의 일부로서 무역 관련 사회 및 환경 문제에 관한 협력의 혜택을 강조한다.
3.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환경이나 노동의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이 장에서의 그들의 의도가 아니며, 제1항과 제2항의 문맥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무역관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임을 인정한다.
4. 이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은
 - 가. 각 당사국의 환경 및 노동 법령의 준수 및 효과적 이행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을 인정한다.
 - 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보존을 증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 다. 제16.6조에 포함된 노동 원칙과 권리에 대한 약속을 인정한다.

제 16.2 조 적용범위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제16.1조제1항 및 제16.1조제2항의 문맥상 환경 및 노동¹ 문제의 무역 관련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양 당사국에 의해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에 적용된다.

제 1 절 환경

¹ 노동이 이 장에서 언급될 때에는 국제노동기구 및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2006 년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각료선언」에서 합의한 「양질의 일자리 의제」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제 16.3 조 일반 원칙

1.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 및 일반적인 모든 천연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환경과 무역 정책이 상호 지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상대국의 천연 자원에 대한 상대국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하고, 자국의 환경 보호 수준과 환경 개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자의 주권적 권리를 재차 표명한다.
3. 양 당사국은, 자국의 역량을 염두에 두고, 이 장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

제 16.4 조 구체적 약속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와 자국의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그러한 사안에 대한 자국의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규정 및 정책이 자국이 당사국인 다자 간 환경협정,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합치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증진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어떠한 당사국도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유인으로서 그러한 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그러한 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면제하겠다고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하지 아니한다. 양 당사국은 자국의 법, 규정 및 정책을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양 당사국 간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또는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4. 양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 법령이 공정하고 투명한 대중 참여 메커니즘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하며, 따라서 양 당사국은 그러한 목표를 위해 자국 법령에 따라 환경 사업, 정책 및 프로그램을 설계, 이행 및 평가하는 전 과정에 걸쳐 대중의 참여를 증진할 것이다.

제 16.5 조 생물다양성

1. 양 당사국은 2001년 11월 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 간의 관계, 그리고 유전자원, 전통지식²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각료 선언(WT/MIN/(01)DEC/1) 제19항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 전통지식, 그리고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식·혁신 및 관행이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바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한다. 자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며, 각 당사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용을 위해 유전자원에 대한 투명한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자국 법령과 생물다양성협약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전통적 생활양식을 구현하고 있는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식, 혁신 및 관행을 존중하고,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을 보유한 자의 참여와 승인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증진한다.

4. 각 당사국은 다음을 제공함으로써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에 기반한 특허 출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 관련 정보를 담고 있고 대중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나. 적절한 심사기관에 서면으로 선행기술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5.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지식재산과 유전자원·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대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정부 간 위원회, 세계무역기구 지식재산권이사회 및 그 밖의 모든 적절한 포럼에서의 논의에 대한 견해 및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다.

6.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을 인정하고, 다자 협정 또는 자국 법령의 향후 발전에 따라 유전자원에 관한 관련 사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제 2 절 노동

제 16.6 조 일반 원칙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 “전통지식”은 유전 자원과 관련된 전통적 지식을 말한다.

양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자국의 의무와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1998)(이하 “국제노동기구선언”이라 한다)와 관련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및 규정 그리고 그에 따른 관행에서 국제노동기구 선언에 기술된 대로 다음의 권리를 채택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나. 모든 형태의 강요에 의한 또는 강제적 노동의 철폐

다.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그리고

라.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제 16.7 조 구체적 약속

1. 양 당사국은 자국의 노동 법령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노동법 및 정책을 채택하고 수정할 수 있는 상대국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노동 법령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자국의 노동 법령 및 국가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자국의 노동법과 규정을 제정, 운영 및 집행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주권적 권리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국의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서는 아니된다.

3. 양 당사국은 자국의 노동 법령에서 부여된 보호 수준을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증진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제 3 절 일반 규정

제 16.8 조 법의 집행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환경 및/또는 노동 법령의 집행을 지향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6.9 조 절차적 보장

1. 각 당사국은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자국 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를 가진 인이 자국의 환경법 및 노동법의 집행을 위한 재판소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행정, 준사법, 사법 또는 그 밖의 관련 재판소를 포함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법 및 노동법의 집행을 위한 그러한 재판소의 절차가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하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의 당사자들이 자국 법상 자신의 권리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구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 16.10 조 투명성

양 당사국은, 각자의 법에 따라, 적절한 공지 및 공공 협의, 그리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비국가 행위자와의 적절하고 적시적인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해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주는 환경 및 노동 조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개발, 도입 및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 16.11 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1. 양 당사국은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를 설치한다.

2.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는 환경 및 노동 사안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협의회가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환경 및 노동 사안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들은 협의될 문제를 고려하여 별도의 협의회 회의에서 회합할 수 있다.

3. 협의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회합하여 공동의 관심 사항을 논의한다.

4. 협의회는 이 장의 적용범위 내에 있는 어떠한 다른 문제도 고려할 수 있고, 가능한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할 수 있으며,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임무상의 어떠한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다.

5. 협의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첫 번째 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되는 적절한 기간 내에 이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달성된 진전을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과 효과성을 검토한다. 그 후, 협의회는 그러한 검토를 위한 새로운 기간을 설정할 것이다.

6. 양 당사국은 양측 간 대화 및 협의 절차가 소진될 때까지 이 장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6.12 조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이 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전달할 접촉선³을 관련 부처에 지정한다.

2. 접촉선의 임무는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가. 협력 프로그램 및 그 밖의 활동의 조율

나. 양 당사국 간의 연락 담당

다. 다른 쪽 당사국, 그리고 적절한 경우 일반 대중에 정보 제공, 그리고

라. 양 당사국 또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임무

제 16.13 조 협 의

1. 이 장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도 양 당사국 간 직접적인 대화, 협의 및 협력을 통하여 우호적이고 신의성실하게 해결된다.

2. 한쪽 당사국은 제16.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이 자국의 접촉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그러한 문제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제 4 절 협 력

제 16.14 조 협 력

1. 환경 및 노동 사안에 대한 준수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 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부속서 16-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호 관심 있는 협력 활동을 증진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협력 활동이 다음과 같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 각 당사국의 프로그램, 개발 전략 및 국가적 우선순위와 합치할 것

나. 그러한 활동의 개발과 이행에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것, 그리고

³ 접촉선은 환경 및 노동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관련 정부 부처가 된다.

다. 각 당사국의 경제, 문화 및 법적 체계를 고려할 것

부속서 16-가 협력

1. 이 장과 관련된 양 당사국 간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환경

- 가. 환경 규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 나. 국제 기후변화체제의 무역 관련 측면
- 다. 무역 관련 환경 문제, 그리고
- 라. 생물다양성의 무역 관련 측면

노동

- 가. 노사 관계
- 나. 근로 조건
- 다. 직업상의 안전 및 보건
- 라. 직업 훈련 및 인적 자원 개발, 그리고
- 마. 노동시장 통계

2.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환경

- 가.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또는 환경적 측면을 담당하는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특히, 세계무역기구, 국제연합환경계획 및 다자 간 환경협정을 포함한다.
- 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침의 효과적 이행과 후속조치, 공정하고 윤리적인 무역, 에코 라벨부착을 포함한 민간과 공공의 인증 및 라벨부착제도 및 녹색 공공조달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책무에 관한 정보 교환과 공동 작업
- 다. 환경 규정, 규범 및 기준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의 교환

라. 세관 협력을 포함하여 다자 간 환경협정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공동 작업, 그리고

마. 다자 간 환경협정과 국제무역규범 간의 관계, 그리고 환경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화에 관한 견해의 교환

노동

가. 정보교환, 특히 다른 쪽 당사국의 노동법과 정책, 노동시장 통계 및 우수 작업 관행에 관한 것

나. 공공 기관, 대학교, 민간 기업 및 노동 문제 전담 조직을 통한 공무원, 전문가, 기술자 및/또는 숙련가로 구성된 대표단 교환

다. 학회, 세미나, 워크숍, 회의 및 대외접촉활동 프로그램 및 훈련의 조직과 참여

라. 공동 연구 및 출판

마. 국제노동기구 선언에 기술된 대로 작업장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의 증진에 관한 활동

바. 노동 보호의 수준과 기준, 그리고 그러한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그리고

사. 이 장의 적절한 이행에 기여하는 다른 모든 활동